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3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고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강화 및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 (안 제4조 제2항)

- 부조리 신고 시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토록 변경

나. 신고기한과 관련된 조항 추가(안 제4조2)

-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 및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공소시효에 맞게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 조항 추가

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추가(안 제13조 제5항)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추가

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16조 제3항 및 별표)

-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상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마.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조항 추가(안 제21조)

-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조항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형법」 제129조~1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년 10월
- 2)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4) 성별영향평가 :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구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구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고대상)”을 “(신고 및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제1항 중 “부조리신고”를 “부조리 신고”로 한다.

제4조의제2항 중 “부조리신고”를 “부조리 신고”로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를 “별지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로 한다.

제4조의2(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조리신고자”를 “부조리 신고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7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7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3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조리신고”를 “부조리 신고”로 한다.

제21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 유형	지급 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u>금품·향응 수수액</u>	- <u>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u>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u>추징·환수액</u>	- <u>추징·환수액의 20%</u>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 100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은 감사·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u>구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u>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p> <p>제3조(신고대상) ①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p> <p>1. 2. 3. 4.(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게 <u>제12조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u></p> <p>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u>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u> 등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u>부조리신고는 그 내용을 구체</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u>구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이나</u>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p> <p>제3조(<u>신고 및 지급대상</u>) ① ----- ----- -----.</p> <p>1. 2. 3. 4.(현행과 같음)</p> <p>②----- ----- ----- <u>부조리 신고</u>-----.</p> <p>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 ----- -----.</p> <p>② <u>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u></p>

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구청장은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신고기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부조리 신고자의-----

-----.

②(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②·③·④(생략)

<신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 ①·②(생략)
-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 ④(생략)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2. 3. 4. 5.(생략)

<신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③·④(현행과 같음)

⑤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 ①·②(현행과 같음)
-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 ④(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부조리 신고-----
-----.

- 1. 2. 3. 4. 5.(현행과 같음)

제21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별표]

[별 표] (개정 2020.6.10.)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향응 수수액	
		• 1억원 이상	- 500만원 이내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400만원 이내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300만원 이내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제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200만원 이내
		• 1백만원 미만	- 100만원 이내
		- 추정 환수액	
		• 40억원 이상	- 500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말산·청탁 행위	•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최고 400만원 이내 (3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
		•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최고 300만원 이내 (2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최고 200만원 이내 (1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
		• 1억원 미만	- 100만원 이내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말산·청탁 행위	- 말산·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말산·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직설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 100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말산·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은 감사·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정 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설>

있다.

[별표]

[별 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제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액	- 추정·환수액의 20%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말산·청탁 행위	- 말산·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말산·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직설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 100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말산·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은 감사·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서식]

[별지 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제4조 관련)

성명	성년월일	연락처	
성주소	연락처	주소	
신고대상	성명	성년월일	
(신고대상)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신고내용			
발행자			
비고			

*서식용량제한: 형사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취할 것이 신고됩니다.

공직부 (세정·정보·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민선8기 공약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연 2건 발생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구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합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산출 근거

- 1) 부조리신고 보상금 : 연 2회 지급 예상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자체수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6. 작성자: 감사담당관 김완주(☎ 2600-6009)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번호	2022-4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감사담당관	통보(조치)일		2022. 10.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고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별지 서식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 (안 제4조제2항)
 - 부조리 신고 시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토록 변경
- 나. 신고기한과 관련된 조항 추가(안 제4조2)
 -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및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공소시효에 맞게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 조항 추가
- 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추가(안 제13조제5항)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추가
- 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16조제3항 및 별표)
 -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상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 마.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조항 추가(안 제21조)
 -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조항 추가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고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42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명	김완주	전화번호 02-2600-600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7일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고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 조례 제13조제1항의 보상금지급위원회 위원이 위촉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참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④(생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④(생략)	종합검토의견 참고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1월 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감사담당관 귀하			

【 관계 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